

##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공모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기후적응 기술 적용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를 위해 2026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상 건축물을 모집합니다.

2026년 4월 7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내용)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지원용도에 해당되는 건물 대상으로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 후 에너지성능 개선, 기후위기적응 등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사업규모) 총 1,688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
  - (신청기간) ‘26. 4. 7.(화) 12:00 ~ ‘26. 4. 17.(금) 18:00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법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8. 12. 31.\*)까지 이월가능
- \* 군집형 건축물의 경우 연차별 사업에 따라 상이함(가이드라인 참조)

## 2. 지원자격

-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3.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아래 지원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6년 1월 1일 이전) (첨부참조)

구분	해당용도		구분	해당용도	
1	도서관		15	사회복지관	
2	기타 교육시설	유치원	16	자활센터	
3		평생교육시설	1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4		직업훈련소	18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학원·교습소	19	가정폭력보호시설	
6		독서실·기원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경로당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노인요양시설		22	건강가정지원센터	
9	노인복지시설		23	청소년복지시설	
10	기타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24	기타 공공시설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11		복합노인복지시설	25		주민공동시설
12	사회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26	어린이회관	
13		정신보건시설	27	기타 전시장	
14		노숙인시설	28	수련시설	

#### 4. 사업유형

-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다각적 지원
  - ① (종합형)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② (맞춤형)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③ (군집형) 하나의 대지 또는 인접한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 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 5. 지원내용 ※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 참고

- (지원항목) 에너지성능개선, 기후위기적응, 추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기술요소
에너지성능개선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 외기에 직·간접하는 창호의 경우, 창호기밀 필수포함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히트펌프 등),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기후위기적응	홍수·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역류방지밸브 등), 우수 유출 저감시설(침수시설, 저류시설 등), 누수침수 센서 등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등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일사조절장치,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혹한	열선포장(지붕, 진입로 등), 스노우가드 등
	기타 (기름 재범하등)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집수·여과·저장),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추가지원	부대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 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및 기후적응 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 (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사업 유형 및 대상 당 정해진 국비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는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섬 지역 및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m<sup>2</sup> 미만), 시그니처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추가지원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
- (지원방식)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지원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70% 지원

《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비 지원 한도》

사업유형	대상구분		지원한도(섬지역)	비 고
종합형	일반 사업	일반건축물(연면적 300m <sup>2</sup> 이상)	400만원 / 3.3m <sup>2</sup> (480만원 / 3.3m <sup>2</sup> )	최대 70억 (서울,중앙·공공 50억)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m <sup>2</sup> 미만)	420만원 / 3.3m <sup>2</sup> (504만원 / 3.3m <sup>2</sup> )	
	시그니처 사업		800만원 / 3.3m <sup>2</sup> (960만원 / 3.3m <sup>2</sup> )	
맞춤형	일반 사업	일반건축물(연면적 300m <sup>2</sup> 이상)	* 지원항목별 단가 등 차이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비 결정 예정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m <sup>2</sup> 미만)	** 종합형(일반사업)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균집형	일반 사업	2~3개동 지원	350만원 / 3.3m <sup>2</sup> (420만원 / 3.3m <sup>2</sup> )	최대 150억 (서울,중앙·공공 107억)
		4~5개동 지원		최대 250억 (서울,중앙·공공 178억)

## 6.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접수
  - \* '26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 공모 가능
- (선정절차) 사전공고 및 희망건축물 접수 → 사업공고 → 종합사업 지원 시행 → 본 사업 공모 → 사업신청 → 대상선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7. 문의사항 및 세부사항 : 가이드라인 참고

○ (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권역별 담당 연락처)

지역	연락처
수도권역 (서울·경기·인천)	055-771-4855      044-960-6204
강원권역 (강원)	055-771-4967, 4971      044-960-6208
충청권역 (대전·세종·충북·충남)	055-771-6925      044-960-6210
전라권역 (광주·전북·전남·제주)	055-771-4970, 4847      044-960-6206
경상권역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055-771-4987, 4822      -

- 이메일 : [greenremodeling@kalis.or.kr](mailto:greenremodeling@kalis.or.kr)

### 【붙임】

1.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1부.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

- ①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이하 “도서관”)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②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이하 “기타교육시설(유치원)”) )
- ③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 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
-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하 “기타 교육시설(직업훈련소)”) )
- 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이하 “기타교육시설(학원교습소)”) )
-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독서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타목에 따른 기원(이하 “기타교육시설 (독서실·기원)”) )
- ⑦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하 “경로당”)
- ⑧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이하 “노인요양시설”)
- ⑨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 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인력개발기관, 노 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이하 “노인복지시설”)
- ⑩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

상담소·아동전용시설·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  
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 ⑪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이하 “기타노유자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 ⑫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 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 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이하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 ⑮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 ⑯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자활센터)”)
- 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사회  
복지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
- 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성폭력  
피해보호시설)”)
- 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  
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하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
- 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②②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 ②③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 ②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역응답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 ②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이하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 ②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7호제다목에 따른 어린이회관(이하 “기타공공시설(어린이회관)”)
- ②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및 제5호제라목에 따른 전시장(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이하 “기타 전시장”)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박물관은 제외
- ②⑧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및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이하 “수련시설”)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